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9. 16(금) 10:00

##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30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## 2. 제안이유

돌봄을 필요로 하는 금천구민에게 돌봄·보건의료·요양·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통합돌봄의 대상(안 제4조)
- 다.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라. 통합돌봄 지원업무 (안 제6조)
- 마.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(안 제7조)
- 바. 예산지원(안 제8조)
- 사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(안 제9조)
- 아. 통합돌봄 사례회의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사회보장법」 제5조, 제2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2. 9. . ~ 9. 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, 보건·의료, 요양, 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조례상의 정의(안 제2조)

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통합돌봄의 정의는 보건복지부 ‘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’ 로드맵과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(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)을 인용하여 규정함.

####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수립,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
#### 3)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통합돌봄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#### 4) 통합돌봄 지원업무 (안 제6조)

#### 5)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(안 제7조)

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 수행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

#### 6)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(안 제9조)

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 사항으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전국에 통합돌봄사업을 보급할 계획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의 단독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·보건의료·요양·돌봄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서비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,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가이드북

1) '지역사회 통합돌봄' 이란.

- **돌봄이 필요한 주민**(노인, 장애인, 정신장애인 등)들이 살던 곳(자기 집, 그룹홈 등)에서 **개개인의 욕구**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, **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** 살아갈 수 있도록 **주거, 보건의료, 영양, 돌봄, 일상 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**

\* 출처 : 「1단계 노인 중심 :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」(2018.11.20.)

2) 비전 및 로드맵

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**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